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0일 박정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의원)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지

역 소멸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전북 순창군, 경남 의령시, 전남 강진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 또는 다자녀·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존 아동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월 5~60만원의 추가 아동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기도 함.

다만,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원의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